



#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(02)

**일 시 :** 2022년 7월 11일(월) 10시  
**장 소 :** 온라인 ZOOM  
**위 원 :** 정광호(위원장), 신동석(서기), 김가석, 김예동, 김현영, 남수진, 류재권, 박성희, 박일호, 서경현, 임종성, 최성숙, 황윤정  
**첫 기 도 :** 남수진

---

##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

### 1. 조교위원 임명

교무처장의 추천을 거쳐 박성희 위원을 조교위원으로 임명함

### 2. 추천위원 동의

안건설명을 위해 예산팀장, 학사지원팀장, 대학원교학팀장의 추천위원자격을 부여를 동의함

### 3.개회

의장이 교수대표(2명), 직원대표(2명), 학생대표(1명), 동문대표(1명) 등의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됨에 따라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

**의 장 :** 금일에 회의 안건을 간략하 설명함

안건 01. 직전회의록 승인

안건 02. 2022학년도 1차 추경(안) 자문

안건 03. 학칙 개정(안) 심의

안건 04.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

### 4. 직전회의록

**서 기 :** 직전회의록 안건에 대해 제안하고 동의함

**의 장 :** 안건에 대한 제청을 요청함

**위원들 :** 제청함

**의 장 :** 직전회의록에 대한 승인 제안 및 보충설명 요청함

**서 기 :** 직전회의록 승인에 동의하고 보충 설명함

**의 장 :** 직전 회의록에 대한 승인요청

**위원들 :**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표함(거수)

**의 장 :**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함

### 5. 2022학년도 1차 추경(안) 자문

**서 기 :** 2022학년도 1차 추경(안) 자문 안건에 대해 제안하고 동의함

**의 장 :** 안건에 대한 제청을 요청함

**위원들 :** 제청함

**의 장 :** 2022학년도 1차 추경 안건에 대해 설명해주기를 예산팀장에게 요청함

예산팀장: 2022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경 자금예산서 관련하여 교비회계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 약 \*,\*\*\*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\*\*\*억원 증가함을 포함하여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자세히 보고함

의 장: 질문이나 의견을 요청함

의 장: 오늘 설명한 추경금액 외 다른 건의 임송토지보상금액이 있는지 질문함

예산팀장: 교육용토지토지 수용보상으로 \*\*0억을 입금받았고 수익용토지보상은 법인에서 추경을 실시할 예정이며, 이를 합하면 \*\*0억임

의 장: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자문 승인을 요청함

위원들 :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표함(거수)

의 장 :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함

6. 학칙 개정(안) 심의

서 기 : 학칙 개정(안)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하고 동의함

의 장 : 안건에 대한 제청을 요청함

위원들 : 제청함

의 장 : 본 안건에 대해 학사지원팀장의 설명을 요청함

학사지원팀장: 학사지원팀장의 설명을 아래 신규대조표로 대신함

현행	개정안	비고
<b>제23조 (재입학)</b> ①~③(생략) ④ <신설>	<b>제23조 (재입학)</b>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. 단, 학칙 제35조 ②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	제23조 4항 추가
<b>제35조 (퇴학 및 제적)</b>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. 1.~6. (생략) 7. <신설>	<b>제35조 (퇴학 및 제적)</b>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. 1.~6. (현행과 같음) 7. 본인 사망시	제35조 2항 개정
<b>제44조 (전공이수)</b>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(주전공)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,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1.~5(생략) 6. <신설> ②~③ (생략)	<b>제44조 (전공이수)</b>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(주전공)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,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1.~5. (현행과 같음) 6. 마이크로전공: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,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②~③ (현행과 같음)	제44조 1항 개정
	부칙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	

의 장: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심의 승인을 요청함

위원들 :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표함(거수)

의 장 :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함

7 대학원. 학칙 개정(안) 심의

서 기 :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하고 동의함

의 장 : 안건에 대한 제청을 요청함

위 원 들 : 제청함

의 장 : 본 안건에 대해 학사지원팀장의 설명을 요청함

교학팀장: 교학팀장의 설명을 아래 신규대조표로 대신함

위 원 들 : 제청함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조 (과정) ①, ② (생략)	제2조 (과정) ①, ② (현행과 같음) <b>③ (외국인 단기과정)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.</b>	제2조 3항 추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9조 (등록) (생략)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. ②~⑤ <b>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.(단, 통합과정은 제외한다) &lt;개정: 2018.3.26.&gt;</b>	제9조 (등록) (현행과 같음)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. <b>단, 단기과정의 경우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수 있다.</b> ②~⑤ (현행과 같음) <b>⑥ &lt;19조 2항이로 이동&gt;</b>	제9조 1항 개정  기존 제9조 6항이 제12조 2항으로 이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0조 (등록금) ①~③ (생략)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,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. 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 2.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	제10조 (등록금) ①~③ (생략)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와 <b>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경우</b>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. 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 2.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	제10조 4항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제19조 (수업연한)</b>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, 박사과정은 3년 이상,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.	<b>제19조 (수업연한)</b> ①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, 박사과정은 3년 이상,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. <개정: 2016.9.26.>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<b>석사과정은 1년 이내, 박사과정은 6개월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.</b> (단, 통합과정은 제외한다) <개정: 2018.3.26.>	기존 9조 6항이 19조 2항으로 이동 및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제4장 수업연한·이수교과목·학점·수료 및 졸업</b> <b>제30조 (성적평가 및 평점)</b>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	<b>제4장 수업연한·이수교과목·학점·수료 및 졸업</b> <b>제30조 (성적평가 및 평점)</b>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	제30조 1, 2항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 <th>평점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+</td> <td>4.5</td> <td>95~100</td> </tr> <tr> <td>A</td> <td>4.0</td> <td>90~94</td> </tr> <tr> <td>B+</td> <td>3.5</td> <td>85~89</td> </tr> <tr> <td>B</td> <td>3.0</td> <td>80~84</td> </tr> <tr> <td>C+</td> <td>2.5</td> <td>75~79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2.0</td> <td>70~74</td> </tr> <tr> <td>F</td> <td>0.0</td> <td>69점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학업성적이 <b>석사과정에서는 C(2.0) 이상, 박사과정에서는 B(3.0) 이상인</b> 경우에만 이수학</p>	등급		평점	점수	A+	4.5	95~100	A	4.0	90~94	B+	3.5	85~89	B	3.0	80~84	C+	2.5	75~79	C	2.0	70~74	F	0.0	69점 이하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 <th>평점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+</td> <td>4.5</td> <td>95~100</td> </tr> <tr> <td>A</td> <td>4.0</td> <td>90~94</td> </tr> <tr> <td>B+</td> <td>3.5</td> <td>85~89</td> </tr> <tr> <td>B</td> <td>3.0</td> <td>80~84</td> </tr> <tr> <td>C+</td> <td>2.5</td> <td>75~79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2.0</td> <td>70~74</td> </tr> <tr> <td>F</td> <td>0.0</td> <td>69점 이하</td> </tr> <tr> <td><b>P</b></td> <td><b>불계</b></td> <td><b>합격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학업성적이 <b>C(2.0) 이상인</b> 경우에만 이수학</p>	등급	평점	점수	A+	4.5	95~100	A	4.0	90~94	B+	3.5	85~89	B	3.0	80~84	C+	2.5	75~79	C	2.0	70~74	F	0.0	69점 이하	<b>P</b>	<b>불계</b>
등급	평점	점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+	4.5	95~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	4.0	90~9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+	3.5	85~8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	3.0	80~8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+	2.5	75~7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.0	70~7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F	0.0	69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	평점	점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+	4.5	95~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	4.0	90~9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+	3.5	85~8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	3.0	80~8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+	2.5	75~7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.0	70~7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F	0.0	69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P</b>	<b>불계</b>	<b>합격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점으로 인정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점으로 인정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</p>	
<p><b>제11장 직제와 위원회</b> <b>제60조 (조직)</b> ①, ② (생략)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<b>박사과정위원회</b>, 입시공정관리위원회,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1장 직제와 위원회</b> <b>제60조 (조직)</b> ①, ② (현행과 같음) ③ <b>대학원행정위원회와</b>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<b>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</b>,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입시공정관리위원회, <b>대학원학술위원회</b>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.</p>	제60조 3항 개정
<p><b>제62조 (대학원 위원회)</b>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, 각 대학원장, 부원장, <b>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산학처장</b>, 재무실장,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</p>	<p><b>제62조 (대학원 위원회)</b>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, 각 대학원장, 부원장, <b>각 처장, 총장 특보</b>, 재무실장,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</p>	제62조 개정
<p><b>제65조 (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)</b> ① (생략)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산학처장, 재무실장,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.</p>	<p><b>제65조 (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)</b> ① (현행과 같음)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산학처장, <b>국제교육원장</b>, 재무실장,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.</p>	제65조 2항 개정
<p><del><b>제68조 (박사과정위원회)</b>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.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</del></p> <p><del><b>제69조 (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)</b>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.</del>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	제68, 69조 삭제
<p><b>제72조의 4 (학술상심사위원회)</b> ① 대학원 <b>학술상 심사</b>를 위하여 대학원에 <b>학술상심사위원회</b>를 둔다. ② <b>학술상심사위원회</b>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<b>5명</b>으로 구성한다.</p>	<p><b>제72조의 4 (대학원학술위원회)</b> ① 대학원 <b>학술 진흥</b>을 위하여 대학원에 <b>대학원 학술위원회</b>를 둔다. ② <b>대학원학술위원회</b>는 대학원장, 부원장,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<b>7명</b>으로 구성한다. ③ 대학원 <b>학술상 심사</b>를 위하여 <b>대학원학술위원회</b> 내에 <b>학술상심사위원회</b>를 둔다. <u>1.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5명으로 구성한다.</u></p>	제72조의 4 전면개정
<p><b>제72조의 5 (학술상심사위원회의 기능)</b> <del>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들의 학술논문 중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한다.</del></p>	<p><del><b>제72조의 5 (대학원학술위원회의 기능)</b> 대학원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del></p> <p><u>1. 대학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</u> <u>2. 학술상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연구, 기획 및 심의</u></p>	제72조의 5 전면개정
<p><b>제12장 학칙 및 준용 규정</b> <b>제13장 학위검증위원회</b></p>	<p><b>제12장 학위검증위원회</b> <b>제13장 학칙 및 준용 규정</b></p>	
(별표 제2호)	(별표 제2호)	별표

현행		개정안		비고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학과</th> <th>수여학위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융합과학과</td> <td>이학석사(M.S.)</td> </tr> <tr> <td>이학박사(Ph.D.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학과	수여학위명		융합과학과	이학석사(M.S.)	이학박사(Ph.D.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학과</th> <th>수여학위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융합과학과</td> <td>이학석사(M.S.) <del>공학석사(M.S.) : 지능형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</del></td> </tr> <tr> <td>이학박사(Ph.D.) <del>공학박사(Ph.D.) : 지능형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</del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학과	수여학위명	융합과학과	이학석사(M.S.) <del>공학석사(M.S.) : 지능형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</del>	이학박사(Ph.D.) <del>공학박사(Ph.D.) : 지능형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</del>
학과	수여학위명													
융합과학과	이학석사(M.S.)													
	이학박사(Ph.D.)													
학과	수여학위명													
융합과학과	이학석사(M.S.) <del>공학석사(M.S.) : 지능형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</del>													
	이학박사(Ph.D.) <del>공학박사(Ph.D.) : 지능형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</del>													
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1. <u>본 개정 학칙 중 제19조, 제30조, 제60조, 제62조, 제65조, 제68조, 제69조, 제72조의4, 제72조의5, 제12장, 제13장에 대한 시행일을 2022년 3월 1일부로 한다.</u></p> <p>2. <u>본 개정 학칙 중 제2조, 제9조, 별표 제2호에 대한 시행일을 2022년 9월 1일부로 한다.</u></p>												

의 장: 1년과정은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인지 질문함

교학팀장: 1년과정은 외국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임

의 장: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심의 승인을 요청함

위원들 :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표함(거수)

의 장 :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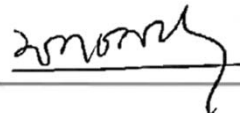
8. 회의종료

의 장: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종료를 선언함


끝기도: 묵상


위 원 김 기 석 \_\_\_\_\_

위 원 김 예 동 \_\_\_\_\_

위 원 김 현 영  \_\_\_\_\_


위 원 남 수 진 남수진 \_\_\_\_\_


위 원 류 재 권  \_\_\_\_\_

위 원 박 성 희  \_\_\_\_\_

위 원 박 일 호 \_\_\_\_\_

위 원 서 경 현 \_\_\_\_\_

위 원 신 동 석  \_\_\_\_\_

위 원 임 종 성  \_\_\_\_\_

위 원 정 광 호  \_\_\_\_\_

위 원 최 성 숙 \_\_\_\_\_

위 원 황 윤 정  \_\_\_\_\_